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16,142명”을 “16,152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3호중 “390명”을 “400명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정원의 규정) 본청·의회사무처·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, 그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 표

서울특별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구 분	계	본 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
총 계	16,152	3,304	232	6,057	6,559
정무직 계	2	2			
시 장	1	1			
부시장	1	1			
일반직 계	6,465	2,505	129	316	3,515
1급	5	3	1		1
2·3급	18	13		1	4
3급	19	10		1	8
3·4급	5	5			
4급	159	83	14	2	60
4·5급	10	10			
5급	837	447	26	42	322
6급	2,093	1,001	54	93	945
7급	2,231	839	28	109	1,255
8급	829	85	5	55	684
9급	259	9	1	13	236
별정직 계	130	51	22	8	49
1급상당	1	1			
4급상당	1	1			
5급상당	5	5			
6급상당	58	26	1	4	27
7급상당	42	16	8	3	15
8급상당	16	2	6	1	7
9급상당	7		7		
연구직 계	269	4		169	96
연구관	44			32	12
연구사	225	4		137	84
지도직 계	23			23	
지도관	1			1	
지도사	22			22	
소방공무원 계	5,070	148		4,922	
소방준감	5	4		1	
소방정	23			23	
소방정 또는 시설서기관	1			1	
소방령	98	18		80	

구 분	계	본 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사업소
소방경	234	13		221	
소방위	254	32		222	
소방장	668	48		620	
소방교	1,570	26		1,544	
소방사	2,217	7		2,210	
교육공무원 계	400			400	
총 장	1			1	
교수 등	337			337	
조 교	62			62	
기능직 계	3,793	594	81	219	2,899
기능6급	272	23	4	6	239
기능7급	313	42	3	17	251
기능8급	977	128	19	41	789
기능9급	1,485	267	23	89	1,106
기능10급	746	134	32	66	514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<u>16,142명</u> 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<u>16,152명</u>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<u>390명</u>	3.: <u>400명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정원의 규정) 본청·의회사무처·직속기관·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3조(정원의 규정)본청·의회사무처·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, 그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.....